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8.] [행정안전부령 제 102호, 2019. 2. 1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5366호, 2018. 2. 9. 공포, 2019. 2. 10. 시행)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매년 2월 15일 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을 정하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령 제 593호, 2019. 2.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관리원을 현행 시·도지사 외에 국토교통부장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5742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서 죽목의 식재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중의

발급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9호, 2019. 2.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여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 2019. 2.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감면규정의 배제대상 추가(제2조제2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제2조의4)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퍼센트로 인상함.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

1)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강화(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제8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추가함.

2)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제3조제7항제8호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합산을 배제하는 등 합산배제 시 적용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을 합리화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제4조의2제3항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마.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제16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1호, 2019. 2.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35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방법과 그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통근 및 통학 목적 운행범위의 확대(제3조제2호가목)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통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소속원만의 통근 및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제12조의4 신설)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함.

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기준 구체화(별표 3 및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음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을 기준으로 30일의 사업일부정지, 18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고,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며, 과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과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함.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 마련 등(제41조제7항 신설, 제87조제1호의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명확화(제117조제1항·제2항 및 제10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제118조의5제1항제7호 신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함.

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

1)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율 100분의 60 및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 규정(제122조의2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 중 추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제122조의2제2항)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사.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간소화 및 신고대상 제외 사업자 규정(현행 제141조제2항제3호 삭제, 제141조제4항 신설)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중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을 삭제하여 항목을 간소화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등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47조의5제2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강화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관련 요건 추가(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요건을 추가함.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 강화(제154조제5항)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2년 보유기

간 요건을 적용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함.

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함.

차.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제155조제4항)

60세 미만이더라도 결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카. 과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제159조의2제1항)

과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과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과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장의 과생상품으로 확대함.

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별표 3의3)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

퓨터 학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추가함.

과.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5)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300만원에서 건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 2.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도 저당권·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추정금액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재산평가의 특례 대상인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와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중사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을 조정하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제2조의2제1항제3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범위를 유지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합리화

1) 주식 등의 지분 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8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를 추가함.

2)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정 금액 계산방법 조정(제15조제13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함.

3) 합병·분할 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제15조제16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다른 법인과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함.

라.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제16조제2항 및 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개선(제27조제2항 신설)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에게,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선(제34조의2제1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사.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 조정(제34조의4)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산정방식을 따름.

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제38조제4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함.

2)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제43조의3제6항)

공익법인 등의 공시자료에 대한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시된 결산 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게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공함.

자.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정 예외사유 확대(제45조의2제9항)

장애인 신탁 재산의 증여세 추정 예외사유에 신탁재산의 재건축 등의 사유로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를 추가함.

차.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1)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함.

2)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5항)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제56조제4항)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

타.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제61조 및 제6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계약의 철회 등으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금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파. 채권액 등으로 평가하는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및 재산의 평가방법(제6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원칙적인 시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하고,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담보신탁계약으로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1호, 2019. 2. 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흠을 보완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을 여권 등 다른 신분증명서와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정 요구 기간(제12조의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는 등의 경우 종전에는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심사·의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 생략 사유 추가(제15조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제36조제3항 본문)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진의 요건을 여권 등 다른 신분증명서와 동일하게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09호, 2019. 2. 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3월 1일 수원고등검찰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공포, 3. 1. 시행)되고, 「검사정원법」의 개정

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검사 40명이 증원됨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의 검사 정원 16명 중 1명(차장검사)은 대검찰청 검사 정원에서 재배정하고, 11명(고등검찰청 검사)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정원에서 재배정하며, 4명(검사장 1명 및 고등검찰청 검사 3명)은 증원되는 검사 정원에서 배정하고, 그 밖의 증원되는 검사 36명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로 배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중 1명(부장검사)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배정하는 등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간 검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9. 1. 29.] [대법원규칙 제 2827호, 2019. 1.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가’ 를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으로 변경함(제2조제3항)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정하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봄(제18조의3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0월 18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